

긴급공고 사유서

계약건명	비전자기록물 인수 및 정리 사업	
소요예산	금138,413,000원(금일역삼천팔백사십일만삼천원) / 부가세 포함	
긴급공고 법적근거 (해당사항에 체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참고	1.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상기 2번, 3번에 준하는 경우로서 긴급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긴급공고 사유	본 사업은 최초 입찰공고가 단독응찰로 1회 유찰되어 재공고하는 건으로, 당초 예상치 못했던 유찰로 인해 사업 시행 기간이 촉박하여 긴급공고로 진행하고자 함	

담당 :	직급 : 지방기록연구사	성명 : 김은아	(서명 또는 인)
팀장 :	직급 : 지방기록연구관	성명 : 김은실	(서명 또는 인)
부서장 :	직급 : 지방기록연구관	성명 : 조영삼	(서명 또는 인)
상기와 같이 긴급공고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08월 28일			
서울특별시 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			